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동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9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이동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우, 김기대, 김기덕,
김정환, 김제리, 김태수,
김평남, 박기재, 박상구,
봉양순, 송명화, 송아량,
양민규, 이영실, 이정인,
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 관내 음악 및 미술학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의 학원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제받고 있어 학원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새로운 기자재의 등장,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습과정별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 기준을 재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음악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㎡ 이상에서 60㎡ 이상으로 수정 (안 별표 4 제52호가목)
- 나. 미술학원 시설 실습실 단위시설별 기준을 현행 80㎡ 이상에서 60㎡ 이상으로 수정(안 별표 4 제53호가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52호가목 중 “80㎡”를 “60㎡”로 하고, 같은 란 가) 중 “10대 이상”을 “3대 이상(피아노 과정은 6대 이상)”으로 하며, 같은 란 나)을 삭제하고, 같은 란 가) 중 “5대”를 “3대”로 하며, 같은 표 제53호가목 중 “80㎡”를 “60㎡”로 하고, 같은 란 2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) 과정별 기준

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2종 이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52. 음악, 국악, 실용음악(성악)</p> <p>가. 시설 실습실 <u>80㎡</u> 이상</p> <p>나. 설비 및 교구 1) 악기과정 가) 주요 실습용 악기 <u>10대 이상</u> 나) 그 밖의 교습과목 악기 <u>각 5대 이상</u> 2) 실용음악 과정 가) 피아노, 기타, 드럼, 베이스 등 악기 <u>5대 이상</u></p>	<p>52. 음악, 국악, 실용음악(성악)</p> <p>가. 시설 실습실 <u>60㎡</u> 이상</p> <p>나. 설비 및 교구 1) 악기과정 가) 주요 실습용 악기 <u>3대 이상(피아노 과정은 6대 이상)</u> 나) 삭제 2) 실용음악 과정 가) 피아노, 기타, 드럼, 베이스 등 악기 <u>3대 이상</u></p>
<p>53. 미술</p> <p>가. 시설 실습실 <u>80㎡</u> 이상</p> <p>나. 과정별 설비 및 교구 2) 과정별 기준 <u>소묘, 수채화(서양화), 한국화(동양화), 디자인, 만화, 포트폴리오, 조소과정, 석고, 정물대, 모포 등 교습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</u></p>	<p>53. 미술</p> <p>가. 시설 실습실 <u>60㎡</u> 이상</p> <p>나. 과정별 설비 및 교구 2) 과정별 기준 <u>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2종 이상</u></p>